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양육 역량 증진을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5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4858호)

가.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12. 4.

다. 회 부 일 : 2025. 1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의 아동양육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의2(보호자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아동 양육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모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¹⁾.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²⁾를 도입하여 2025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보편적 의무 수당으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경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현재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지급 금액 인상 및 지급 연령 상향에 대한 지속적 논의³⁾와 함께 부모의 양육

1) 2026. 1. 7.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세 미만(현행법에 따른 8세 미만에서 2026년부터 1세씩 상향)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음.

2)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3) 2026. 1. 7.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급 연령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세씩 단계적으로 13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안반영폐기된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준호의원안(15만원), 전진숙의원안·황정아의원안·서영교의원안·이용우의원안(20만원), 이수진의원안·용혜인의원안(30만원), 박성준의원안(50만원, 부모급여는 삭제)에서는 지급액 인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었음.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보호자의 아동 양육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보호자 대상 교육은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공 중이나, 주로 보호자의 참여 또는 자발적 관심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에 관심이 높은 보호자만 유입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교육의 저변을 넓힐 필요와 함께 보호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u>부모교육</u> ·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제공 현황 >

부 처	제공기관	제공방식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수강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오프라인	건강한 부모 역할 등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부	학부모온누리	온라인	발달단계별 온라인 강의 및 가이드북 제공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오프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등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 대상 교육 제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조문의 위치는 총칙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